

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

제정	2015. 11. 6	조례	제1518호
일부개정	2016. 8. 8	조례	제1598호
일부개정	2018. 5. 14	조례	제1825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19. 12. 13	조례	제1991호
일부개정	2020. 7. 2	조례	제2045호
일부개정	2022. 4. 13	조례	제229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0. 7. 2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0. 7. 2>

1. “농업기계 임대사업”이란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(이하 “농기계”라 한다)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.
2. “임대농기계”란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.
3. “농기계 임대료”란 임대농기계 사용의 대가로 시장이 부과·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4. “임차인”이란 농기계 임대료(이하 “임대료”라 한다)를 지불하고(면제대상을 포함한다)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
[중전 제3조에서 이동 2018. 5. 14]

제3조(농업기계 임대사업) ① 시장은 관내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영농편의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(이하 “임대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임대사업을 위하여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둔다. <개정 2022. 4. 13>

[전문개정 2020. 7. 2]

제4조(시설 등 확보) ① 삭제 <2020. 7. 2>

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, 장비,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20. 7. 2]

제5조(임대사업의 범위)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>

1.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
2.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임대농기계의 사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
4. 그 밖의 농기계의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

[제목개정 2016. 8. 8]

제6조(운영 및 관리) ① 삭제 <2020. 7. 2>

② 시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2>

③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5. 14, 2019. 12. 13, 2020. 7. 2, 2022. 4. 13>

1. 삭제 <2022. 4. 13>
2. 삭제 <2022. 4. 13>
3. 삭제 <2022. 4. 13>

④ 시장은 사용 가능 헥수의 경과, 파손 등으로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거나 분실한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0. 7. 2>

⑤ 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7. 2>

⑥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, 관리·정비전담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, 2020. 7. 2>

제7조(임대농기계) 임대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

계로 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>

1. 농작물 재배에 활용 가능한 농기계
2. 교육훈련용 농기계 중 교육목적으로 2년이 경과한 농기계
3. 그 밖에 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류

[제목개정 2016. 8. 8]

제8조(임대기준 등) ① 임대대상자는 용인시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작목반 등으로 하고, 사용지역은 용인시 관내로 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0. 7. 2, 2022. 4. 13>

② 1농가당 임대농기계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하고,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>

③ 임대기간은 해당 임대농기계의 출·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, 출·입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>

제8조의2(임대신청 및 임대)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임대농기계, 임대기간, 작업종류, 작업장소 및 작업면적을 밝혀 시장에게 임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직접 방문 외에 전화, 인터넷 등을 통해 임대 신청을 받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신청을 받은 경우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7. 2]

제8조의3(임대농기계 운송 등) ①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직접 운송해야 한다. 다만, 운송 차량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운송하여 줄 수 있으며, 이 경우 운송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운송료는 별표 3에 따른다.

③ 운송료는 임차한 농기계 임대료와 함께 납부 고지하고, 운송료 징수 및 납부 방법 등은 제11조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2. 4. 13]

제9조(임대계약 및 사전교육 등) ① 시장은 임대농기계를 임대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신청을 한 자와 농업기계 임대(사용)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19. 12. 13, 2020. 7. 2, 2022. 4. 13>

② 시장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취급·조작 요령을 임차인에게 사전에 교육하고,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임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0. 7. 2>

[제목개정 2020. 7. 2]

제10조(임대계약 해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, 2020. 7. 2>

1.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2. 임차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
3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한 경우
4. 임차인이 임대농기계를 반납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5. 그 밖에 임대사업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

② 삭제 <2020. 7. 2>

[제목개정 2020. 7. 2]

제11조(임대료) ① 임차인은 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, 임대료 징수 및 수입금 처리절차는 「용인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9. 12. 13>

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고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,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

우 또한 같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2. 4. 13>

제12조(임대료의 감면)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>

1. 반액 감액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
다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

2. 전액 면제: 재해·재난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은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2. 4. 13>

[제목개정 2020. 7. 2]

제13조(임대료의 부과 취소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0. 7. 2>

1.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

2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

3. 삭제 <2020. 7. 2>

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부과처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0. 7. 2>

1. 제1항제1호의 경우: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전액. 다만, 임차인이 출고 예정일 당일에 임대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임대농기계를 출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고일 임대료의 2분의 1과 잔여일 임대료의 전액을 부과 취소하여야 한다.

2. 제1항제2호의 경우: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전액

[제목개정 2020. 7. 2]

제14조(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)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임대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〈개정 2016. 8. 8〉

② 임차인은 임대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8. 8〉

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임대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〈개정 2016. 8. 8〉

④ 임대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·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,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〈개정 2016. 8. 8〉

제15조(임대농기계의 반환)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8. 8〉

②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2. 4. 13〉

[제목개정 2016. 8. 8]

제16조(임대의 제한)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. 〈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2. 4. 13〉

1.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1일 이상 지체한 경우: 1일당 1개월. 다만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2.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6개월
3. 제14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: 1년
4. 임대료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: 1개월
5. 그 밖에 반납 장비점검 결과에 따른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

등 임대사업의 운영·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: 1개월에서 3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

[제목개정 2022. 4. 13]

제17조 삭제 <2020. 7. 2>

제17조의2(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 등) 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고정하여 설치된 농업기계(이하 “고정식 농업기계”라 한다)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4. 13>

② 고정식 농업기계의 사용, 사용료 등, 사용자의 책임 및 제한 등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8조,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임대”는 “사용”으로, “임대료”는 “사용료”로, “「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2 제1호가목”은 “별표 1의2의 사용료 징수 기준”으로, “농업기계 임대(사용) 계약서”는 “고정식 농업기계 사용신청서”로 본다. <개정 2020. 7. 2>

[본조신설 2019. 12. 13]

제18조(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)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[전문개정 2020. 7. 2]

제1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0. 7. 2>

1. 삭제 <2020. 7. 2>
2. 삭제 <2020. 7. 2>
3.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시장이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 8. 8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

선출한다. <개정 2018. 5. 14, 2020. 7. 2>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0. 7. 2, 2022. 4. 13>

1. 임대사업 업무 담당 과장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가.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1명

나. 농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

다.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삭제 <2020. 7. 2>

4. 삭제 <2020. 7. 2>

④ 삭제 <2020. 7. 2>

제20조의2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0. 7. 2>

② 삭제 <2020. 7. 2>

[중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. 7. 2]

제21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8, 2018. 5. 14, 2020. 7. 2>

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3.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
4.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[제목개정 2018. 5. 14]

제23조 삭제 <2018. 5. 14>

제2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

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8. 8>

② 삭제 <2018. 5. 14>

③ 삭제 <2018. 5. 14>

제24조의2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13>

[본조신설 2020. 7. 2]

제2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8. 8, 2020. 7. 2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용인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한다.

부칙 <2016. 8. 8 조례 제159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5. 14 조례 제1825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른 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로 본다.

제3조(용인시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2019. 12. 13 조례 제1991호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

부칙 〈2020. 7. 2 조례 제2045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22. 4. 13 조례 제2294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삭제 <2019. 12. 13>

[별표 1의2] <신설 2019. 12. 13>

고정식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(제17조의2 관련)

사용료	징수 단위	사용료 (원)
콩 정선 선별기	정선량 40kg당	1,000

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

[별표 2] 삭제 <2018. 5. 14>

[별표 3] 〈신설 2022. 4. 13〉

임대농기계 운송료(제8조의3 관련)

(편도 기준/대)

구분	1톤 차량 적재 가능 농기계	1톤 차량 적재 불가능 농기계
운송료	5,000원	10,000원

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

[별지 제1호서식] 삭제 <2022. 4. 13>

[별지 제2호서식] 삭제 <2022. 4. 13>

[별지 제3호서식] 삭제 <2022. 4. 13>

[별지 제4호서식] 삭제 <2022. 4. 13>

[별지 제4호의2서식] 삭제 <2022. 4. 13>

[별지 제5호서식] 삭제 <2022. 4. 13>

[별지 제6호서식] 삭제 <2022. 4. 13>